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에 지방공무원의 탄력적 인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인사운영상 미비사항 개선

3. 주요내용

가. 재난 발생시 신속 대응을 위한 신규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(안 제13조)

- 재난 상황 발생시 공개경쟁임용 신규임용후보자명부 등재자를 정원 외로 임용 가능하도록 함

나. 재난 발생시 인사운영을 위한 승진·전보기준 즉시 변경 적용(안 제8조의2)

- 코로나 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,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변경된 승진·전보기준의 즉시 적용을 허용

다. 기술계고 경채시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 불산입(안 제21조)

- 기술계고 졸업자 경력경쟁임용 시험의 합격 유효기간에 병역복무기간을 포함하지 않도록 개선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0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의2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의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·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조제3항 전단 중 “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”을 “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의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경우

제21조제2항 중 “법 제27조제2항제10호”를 “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와 법 제27조제2항제10호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신규임용방법에 관한 적용례)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당시 공개경쟁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제3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의 관한 적용례)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이후 합격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자에게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의2(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) ①·② (생략)	제8조의2(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 전의결 대상 등) ①·② (현행 과 같음)
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·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. <단서 신설>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다만,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의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·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제13조(신규임용방법) ①·② (생략)	제13조(신규임용방법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임용권자나 임용후보자 추천권자는 7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 경쟁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 중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은 임용의 유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기관에	③ -----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----- ----- -----

그 직급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임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정원은 그 신규임용후보자가 임용된 후 그 직급에 상응하는 결원이 발생하면 없어지는 것으로 본다.

<신 설>

<신 설>

제21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) ① (생략)
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7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효력은 2년으로 하되,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복무를 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의 의무복무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 ③ (생략)

 ---. -----

 -----.

1.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사람
2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4조제1항에 의한 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’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충원이 필요한 경우

제21조(경력경쟁임용시험등 합격의 유효기간) ① (현행과 같음)
 ② ----- 법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와 법 제27조제2항제10호-----

 -----.
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344